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06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김종민 · 김준형 · 윤종오
허성무 · 강준현 · 손 솔
김영배 · 황운하 · 한창민
최혁진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주요 헌법기관 대부분이 소재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였음. 주요 국가행정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식에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되며 세종시는 지방 자치분권 발전의 상징이 되었음.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법률적 규정의 한계로 도시 발전에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음.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향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리하여 정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음.

네덜란드,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선진국 일부는 경제·사회·문화수도 외에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음.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인구과밀 해결 및 지방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이행하여 국가의 국제적 수준을 올리고자 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할 자치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행정수도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7조 등).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다른 법률의

용어 등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위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수도”란 국회·정부·법원 등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정착과 세종특별시의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항에 따른 세종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

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 및 청원군 등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에 일부 지역이 편입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세종특별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세종특별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시는 세종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세종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세종특별시장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세종특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세종특별시의 설치 및 지위) ①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③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⑤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주요 헌법기관의 소재지) ①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시에 둔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정착 지원
2. 행정수도로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조성
3. 국내외적으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제9조(세종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0조(세종특별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시가 행정수도로서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시의 행정수도로서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3. 세종특별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세종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세종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14조(세종특별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⑥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항목별로 특별시 특성에 부합하는 산정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와 세종특별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시 설치로 인하여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8명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3.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4. 「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세종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

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에 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

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

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세종특별시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시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시장(세종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세종특별시의회의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 세종특별자치시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의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시장, 세종특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의원, 세종특별시의 조례 및 세종특별시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규칙은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시의 조례 및 세종특별시의 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군은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군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세종특별시계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 제목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한다.

제197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2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세종특별시 및 세종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세종특별시 및 세종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제46조의3 중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세종특별시장 또는 세종특별시교육감”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0조제6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전단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세종특별시의회”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각각 “세종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0조의4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별시장”으로 한다.

④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전지방법원의 시·군법원 란 중 “세종특별자치”를 “세종특별”로 하고, 소재지 란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대전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대전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란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세종특별시”로 한다.

별표 7의 대전지방법원의 시·군법원 란 중 “세종특별자치”를 “세종특별”로 하고, 관할구역 란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세종특별시”로 한다.

⑤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를 “세종특별시에”로 한다.